

예산총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6,372,391	13,091,172
일반회계	401,053,142	12,031,594
특별회계	35,319,249	1,059,577
기타특별회계	35,319,249	1,059,577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704,000	21,12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64,843	16,945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2,064,447	61,933
성진강댐특별회계	10,000,000	300,000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	4,544,671	136,34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506,988	495,21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34,300	28,029

제 2 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20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2,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885,286천원」과 같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